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4조)

나.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제7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마.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un7317@junggu.seoul.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별관4층 복지지원과

- 팩스 : 02)3396-8721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 및 사회적 고립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